

#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 개정대비표

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

## 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</b> 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</p> <p><b>제 1 조 (목적) ~ 제 3 조 (업무의 방법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4 조 (기본 협약사항)</b></p> <p>① (기재생략)</p> <p>② (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)</p> <p>1.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<p>2.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</p> <p>1.~2. (기재생략)</p> <p>3.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<b>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 일 이내에서 정하기로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</b> (구매기업용-협력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</p> <p><b>제 1 조 (목적) ~ 제 3 조 (업무의 방법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4 조 (기본 협약사항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)</p> <p>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<p><b>&lt;삭제&gt;</b></p> <p>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<b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</b></p>	<p>호 번호 삭제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삭제</p> <p>외상매출채권 만</p>

<p><b>합니다.</b></p> <p>④~⑦ (기재생략)</p> <p>⑧ 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  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<b>전</b>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<b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</b>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⑨~⑩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5 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 ~ 제 10 조 (기타 특약사항)</b>  (기재생략)</p>	<p><b>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b></p> <p>④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  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<b>직전</b>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<b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</b>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를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⑨~~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5 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 ~ 제 10 조 (기타 특약사항)</b>  (현행과 같음)</p>	<p>기일 단축에 따른 문구 수정</p> <p>용어 수정</p>
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2. 개정 시행일: 2019년 7월 4일**

**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**